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6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서천호·임종득·강선영

이만희 • 이달희 • 김용태

김예지 · 서지영 · 김민전

진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.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.

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(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(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7조 중 "50의"를 "70의"로, "대통령령으로"를 "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(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7조 중 "50의"를 "70의"로, "대통령령으로"를 "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8541 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 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 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중 "50"을 "70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	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		
개정법률 부칙	개정법률 부칙		
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	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		
료 보조) 지역가입자인 농어업	료 보조)		
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			
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			
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			
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			
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			
중 100분의 <u>50의</u> 범위 내에서	<u>7</u> 0의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		
 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	<u></u> 통령령으로		
서 지원한다.			
	<u>.</u>		
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	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		
개정법률 부칙	개정법률 부칙		
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	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		
료 보조 특례) 사업장가입자	료 보조)		
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			
가입자로 된 농어업인(당연적			
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			
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			

한다)에게는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.

<u>70의</u> <u>가입</u>
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
<u> </u>